

1. 개정이유

타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,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하도록 함. 현행 법령상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회계교육을 위탁하고, 회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·지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(2018.11.1.시행)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
- 나.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,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하도록 함
- 다. 현행 법령상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회계교육을 위탁하고, 회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·지도 등의 근거 마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 :

공기업·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기업·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중 “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제1호”를 “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

③ 공기업·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제2호”를 “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- ③ 각 기관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) ① ~ ④ (생략)	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회계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 <u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.	⑤ -----「 <u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5조제1항제1호-----.
제14조(결산서 제출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14조(결산서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</u> ③ <u>공기업·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④ · 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
제16조(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) ① · ② (생략)	제16조(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	③ -----

의 작성자와 작성범위 등에 관하여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제2호를 준용한다.

④ (생략)

제22조(회계교육의 실시)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--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회계교육의 실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각 기관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